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

(김재원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026-64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 2026. 9. 2.

발 의 자 김재원·김진구·김수경·안재훈
안상미·장현태·양진석·정락재
장규철·김영근 의원(10인)

1. 제안이유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
미추홀구의회 심의기능을 강화하고,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
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나. 예비비 지출 승인 (안 제2조)
- 다. 예비비 지출 보고 (안 제3조)
- 라. 불승인 사유에 대한 조치 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회계법」
- 나. 입법예고: 2026. 9. 2. ~ 2026. 9. 7.
- 다. 비용추계: 불임 미첨부 사유서 첨부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와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예비비 지출 승인)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.

제3조(예비비 지출 보고 등) ① 구청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, 분기 만료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회기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지출 승인부서에서 총괄작성하여 제출하고, 지출 부서장이 보고한다.

제4조(조치의무) 구청장은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 원 미만 (연평균 5천만 원 미만에 해당)

4. 작성자 : 기획예산실장 한성희

□ 관계 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- 제150조(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,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재정법」

- 제43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,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6. 9.>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5. 28.>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. <신설 2014. 5. 28.>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4. 5. 28., 2021. 1. 12.>
- [전문개정 2011. 8. 4.]

□ 「지방회계법」

제16조(결산서의 작성 등) ① 제15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용을 요약하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제15조제2호에 따른 세입·세출 결산은 세입·세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③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, 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.

④ 제15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「지방재정법」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,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결산 개요 및 제2항에 따른 세입·세출 결산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

제10조(결산서 등의 제출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(이하 "감사위원"이라 한다)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<개정 2021.12.16>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. <개정 2024.4.16>